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

			<p>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p> <p>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p>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9. 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0. Class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현행과 같음) 8. Class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9. Class 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0. Class S-I: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p>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이상인 투자자를 위한 수익증권</p> <p>(이하 생략)</p>	<p>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이상인 투자자를 위한 수익증권</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p> <p>②~③ (생략) <추가></p>	<p>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를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 8. 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를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 (이하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현행과 같음) 7. Class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를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 8. Class 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를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 (이하 현행과 같음)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p>및 신탁업자의 변경)</p>	<p>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p>	<p>한다. <추가></p> <p>②~③ (생략) <추가></p>	<p>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Class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11. (생략) 12. Class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Class S: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11. (현행과 같음) 12. Class S-P: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70% 이하를 국공채에 투자하여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70% 이하를 국공채에 투자하여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다. 종류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구조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p>(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5.25%</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p>	<p>(현행과 같음)</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11.28%</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4 급에 해당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u></p>

		<p>대상기간 중 <u>수익률의 표준편차</u>로 계산됩니다</p> <p>·</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5.25%</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u>를 바탕으로 합니다.</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p> <p><u>1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p> <p>(이하 생략)</p>	<p><u>예상액</u>으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11.28%</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u>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u>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p> <p>1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 5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 6등급 보통 위험: 1% 이하</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1.가.매입</p>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u></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현행과 같음)</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u></p>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형(S-I)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이상인 투자자</u></p> <p>(이하 생략)</p>	<p>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형(S-I)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이상인 투자자</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p>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생략) 분리과세 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p>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다소높은위험]	투자위험등급 : 2 등급 [높은위험]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p>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p> <p>(이하 생략)</p>	<p>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p>	<p>(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13.81%</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수익률의 표준편차</u>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13.81%</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u>를 바탕으로 <u>합니다.</u></p>	<p>(현행과 같음)</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0.75%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으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0.75%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p> <p>1 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 2 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 3 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 4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 5 등급 보통 위험: 5% 이하 6 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p> <p>(생략)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추가)</p>	<p>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u></p> <p>1 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 2 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 3 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 4 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 5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 6 등급 보통 위험: 1% 이하</p> <p>(현행과 같음)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u>변경전 위험등급 : 3 등급</u> <u>변경후 위험등급 : 2 등급</u> <u>위험등급 변경사유 :</u> <u>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u></p>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p>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내용 삭제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① (생략) ②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u></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① (현행과 같음) <삭제></p>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2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5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여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와 채권 시장 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여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와 채권 시장 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다. 종류형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u>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온라인 슈퍼(S) : 자산운용사의

		<p>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0.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p>	<p>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합니다.</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변경</p>	<p>(생략)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2.02</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수익률의 표준편차</u>로 계산됩니다</p>	<p>(현행과 같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93%</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u></p>

		<p>.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2.02%</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실제 수익률 변동성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u> 바탕으로 합니다.</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p> <p><u>1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p> <p>(이하 생략)</p>	<p><u>예상액으로</u>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93%</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u>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u></p> <p>1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 5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 6등급 보통 위험: 1% 이하</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가.매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u></p> <p><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통한 투자자이면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현행과 같음)</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u></p>

		(이하 생략)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내용 삭제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생략) ②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u> (이하 생략)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분리과세 한도: <u>1,2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이하 생략)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u>1,5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다. 종류형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u>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u>

		<p>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p>	<p>(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17.11%</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수익률의 표준편차</u>로 계산됩니다</p>	<p>(현행과 같음)</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9.09%</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u></p>

		<p>.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17.11%</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실제 수익률 변동성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u> 바탕으로 합니다.</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 <u>1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p> <p>(이하 생략)</p>	<p><u>예상액으로</u>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9.09%</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u>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u> <u>1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1% 이하</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가.매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u></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현행과 같음)</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u></p>

		받은 회사(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이하 생략)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내용 삭제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생략) ②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u> (이하 생략)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2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5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u>3등급 [다소높은위험]</u>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u>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Class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12. (생략) 13. Class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Class S: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12. (현행과 같음) 13. Class S-P: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현행과 같음)

<p>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p> <p>②~③ (생략) <추가></p>	<p>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Class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12. (생략) 13. Class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Class S: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12. (현행과 같음) 13. Class S-P: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현행과 같음)

<p>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p> <p>②~③ (생략) <추가></p>	<p>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Class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 (생략) 12. Class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Class S: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 (현행과 같음) 12. Class S-P: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현행과 같음)

<p>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p> <p>②~③ (생략) <추가></p>	<p>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변경시행일 : 2025년 01월 17일
4.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5.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Class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 (생략) 12. Class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Class S: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 (현행과 같음) 12. Class S-P: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u>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이하 현행과 같음)

<p>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p> <p>②~③ (생략) <추가></p>	<p>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6.다.종류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구조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u>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u>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u>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u>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0.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p>(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16.45%</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수익률의 표준편차</u>로 계산됩니다</p>	<p>(현행과 같음)</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3.03%</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u></p>

		<p>.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16.45%</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실제 수익률 변동성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u> 바탕으로 합니다.</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 <u>1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p> <p>(이하 생략)</p>	<p><u>예상액으로</u>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3.03%</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u>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u> <u>1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1% 이하</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가.매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u></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현행과 같음)</p> <p>2) 종류별 가입자격 <u>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u></p>

		받은 회사(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이하 생략)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가.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강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베어링자산운용(주)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u>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미국인</u> 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생략) ②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u> (이하 생략)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u>3 등급 [다소높은위험]</u>	투자위험등급 : <u>2 등급 [높은위험]</u>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p>제 2 부.6.다.종류형 구조</p>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p>	<p>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0.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p>	<p>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p>	<p>(생략)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14.86%</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p>	<p>(현행과 같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4.35%</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u>해당되는 높은 위험</u>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p>

		<p>대상기간 중 <u>수익률의 표준편차</u>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u>는 14.86%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u>를 바탕으로 합니다.</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p> <p><u>1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p> <p>(생략)</p> <p>※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추가)</p>	<p>대상기간 중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u>으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u>은 34.35%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u>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u>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u>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u>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u></p> <p><u>1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u> <u>2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u> <u>3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u> <u>4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u> <u>5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6등급 보통 위험: 1% 이하</u></p> <p>(현행과 같음)</p> <p>※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u>변경전 위험등급: 3등급</u> <u>변경후 위험등급: 2등급</u> <u>위험등급 변경사유:</u> <u>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u></p>
제 2 부.11.가.매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u>집합투자증권에</u></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현행과 같음)</p> <p>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u>자산운용사의</u></p>

		<p>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p> <p>(이하 생략)</p>	<p>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가.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강화	<p>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베어링자산운용(주)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u>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미국인</u>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p>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① (생략)</p> <p>②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u></p> <p>(이하 생략)</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p>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2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5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관한 사항			
제 2 부.6.다.종류형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p> <p>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p> <p>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p>(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23.76%</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p>	<p>(현행과 같음)</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47.35%</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p>

		<p>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23.76%</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실제 수익률 변동성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합니다.</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p> <p><u>1 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u>2 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u>3 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u>4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5 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u>6 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p> <p>(이하 생략)</p>	<p>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u>으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47.35%</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u>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u></p> <p><u>1 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u> <u>2 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u> <u>3 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u> <u>4 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u> <u>5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6 등급 보통 위험: 1% 이하</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가.매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현행과 같음)</p> <p>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 (이하 생략)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가.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강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베어링자산운용(주)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u>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미국인을</u>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생략) ② <u>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u> (이하 생략)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u>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200</u>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5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관한 사항			
제 2 부.6.다.종류형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p> <p>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p> <p>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p> <p>(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p>(생략)</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22.64%</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생략)</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p>	<p>(현행과 같음)</p> <p>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47.94%</u>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현행과 같음)</p> <p>※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p>

		<p>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연환산 표준편차는 22.64%</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실제 수익률 변동성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합니다.</p> <p>(생략)</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u></p> <p><u>1 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u>2 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u>3 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u>4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5 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u>6 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p> <p>(이하 생략)</p>	<p>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u>으로 계산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47.94%</u>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u>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u>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u>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p>(현행과 같음)</p> <p>- <u>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u></p> <p><u>1 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u> <u>2 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u> <u>3 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u> <u>4 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u> <u>5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u>6 등급 보통 위험: 1% 이하</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1.가.매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p>	<p>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현행과 같음)</p> <p>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u></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 (이하 생략)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가.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강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베어링자산운용(주)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u>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u>미국인을</u>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1.나.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생략) ② <u>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u> (이하 생략)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u>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4.나.과세	소득세법 개정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200</u>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500</u>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u>3등급 [다소높은위험]</u>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p>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생략)</p>	<p>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u>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 슈퍼(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	---------	-------------